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5306(본소), 2018다245313(반소) 판결 [(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5306(본소), 2018다245313(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6나2076535(본소)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 (탈퇴)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C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이경천, 조세한

판 결 선 고 2021. 4. 29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6나2076535(본소), 2016나2076542 (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본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 중 토지보상금과 그 증액분에만 미치고, 다만 증액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19억 원 중 토지보상금에 대한 증액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이 위 19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등 그 효력이 위 19억 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 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물상대위의 우선적 효력과 범위, 피압류 채권의 특정과 범위, 의사표시의 해석, 화해권고결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변론주의 원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반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D와 E이 원고에게 증액청구 소송에서 확정될 보상금 증액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주식회사 D가 원고로부터 사업계속을 위한 신규 자금을 대출받고 사료를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련의 담보 제공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 상회복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성립,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 홍구대법관 이기택주 심 대법관 박정화대법관 김선수